

정기(기동점검) 점검 결과보고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1공구)]

- 점검일시 : 2021.11.29 (월)
- 점검결과
- ◆ 점검자 : 정달영

○ 기타 안전관리(도시철도사업부)

- 교통처리계획도의 단계별 교통안내표지, 차선 안내, 신호수 등을 숙지하고 설치상태를 확인하여 교통사고에 의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리 요함.
 - 104환기구~104정거장까지 교통처리계획도에 의한 교통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았음.
 - 104환기구 교통안내표지판이 보행자용과 운전자용이 위치가 바뀌어 시인성이 나쁘니 위치 변경 및 방향 변경 요함.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 기타 안전관리(도시철도사업부)

- 104정거장 민원으로 인하여 보도측 휨스를 철거한 상태이며, 작업을 시민이 PE방호벽에 밀착하여 보고 있으므로 낙하비래 등 재해위험 등이 있고 작업장 출입금지가 야간에 이루어지지 않을수도 있으니 방안 강구 요함.

- 104정거장 천공후 발생하는 니토 및 오수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문제가 없도록 관리 요함.

- 103환기구 차수공법 후 발생하는 니토 및 오수처리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문제가 없도록 관리 요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 흙막이가시설 안전(도시철도사업부)

- 104환기구 측면 보도부분 토압이 계산되지 않았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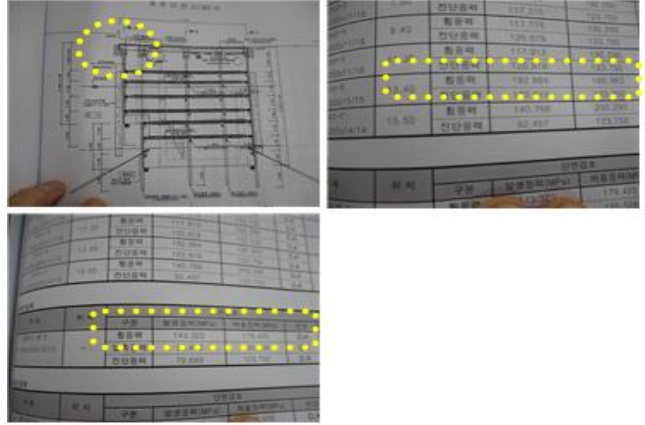
- 임의로 L형강으로 보완한 상태임.

- 구조계산서의 응력이 마지막단 띠장, 엄지말뚝 등이 여유가 없으므로 구조안정성 검토를 외적조건에 맞도록 검토하여 전문기술자의 확인을 받기 바람.



- 또한 현재 수직 굴착되어 있는 토사면은 안정성이 낮으므로 안정성이 있는 경사에 맞춰 굴착 하든지 기타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시공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6조(조립도),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방지)



○ 건설기계 안전(도시철도사업부)

- 운전자 이석시 차량열쇠를 분리 보관하기 바람.(103환기구)

- 굴착기가 좁은 공간에서 토사반출을 하고 있으며, 주통로가 옆에 있고, 용접기와 기타 자주 사용해야 하는 장비 등이 있어 작업자가 언제든지 통행가능한 곳이므로 유도수 배치를 검토 바람. 또한 하부작업자(소형굴착기 2대)와 신호 등에 관한 교육 및 관리를 철저히 수행 요함.(104환기구)

- 굴착기, 천공기가 동시 작업을 하고 측면에 작업자 2인이 있으며 수시로 작업자가 왕래하는 곳이므로 유도수 배치 요하며, 유도수의 역할, 유도수의 위치 등에 대한 교육관리도 철저히 수행 요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운전 위치 이탈 시의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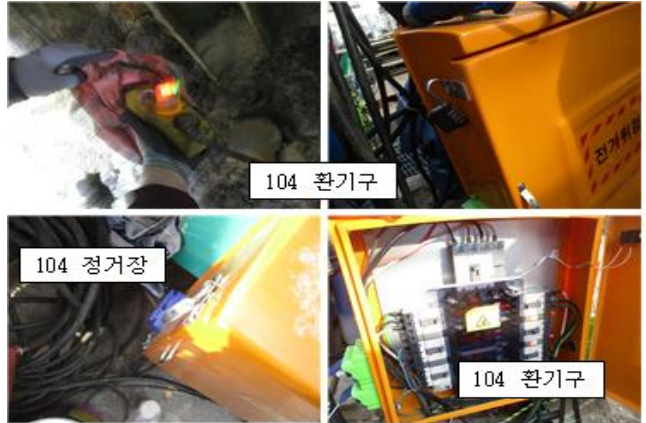
※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 건설기계-1(건설기계), 건설기계-2(이동식 크레인), 건설기계-8(지게차)





○ 감전재해 예방(도시철도사업부)

- 104환기구 지하 가설전선 미접시이니 접지상태 수시 확인 요함.
 - 분전반은 시건상태 유지하고, 회로도 표식 요함.
 - 104정거장 발전기 가동중이나, 외함접지가 안되어 있고, 분전반 및 용접기도 미접지 상태이니 확인 요함.
 - 발전기 충전부 보호 요함.
 - 102환기구 계측기용 전선과 작업용 전선등이 혼재되어 작업중 절단 또는 누전등이 발생할수 있으니 정리 혹은 보호용관 설치 등을 검토 요함.
 - 각 작업장소 용접기 충전부 보호 요함.
- ※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 감전-2(가설분전함), 감전-3(가설전선), 감전-10(이동식 발전기)



○ 추락재해 예방(도시철도사업부)

- 104환기구 작업구 측면에 다단으로 H-beam이 놓여 있어 추락재해의 위험이 있으니 관리 요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 중량물취급 안전(도시철도사업부)

- 103환기구 항공마대는 U-자형 고리가 있는 것을 사용하기 바람.
- 101정거장 가시설 작업중 선오거굴착후 H-pile 삽입을 위한 운반시 두줄걸이 이상을 하여 안전사고 예방하기 바람.
※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 중량물취급-5(항공마대)



○ 화재/폭발/질식 재해 예방(도시철도사업부)

- 104정거장 가스대차는 위험물보관소가 자재보관소에 따로 관리되는 작업장소 특성상 야간에 작업장에 두면 안되니 관리를 철저하게 수행 요함.
- 103환기구 그라우팅 작업중이며 위험성평가 표에 작업계획에 대한 상세한 위험성평가가 누락되어 있으며.



- 밀폐공간에 가까운 트레일러 등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등이 있으니 작업특성에 따른 위험성평가 등 위험요인과 보호구,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에 관한 관리 및 고지 등을 철저히 수행 요함.

- 104환기구 위험물보관소(유류) 하부는 부식포 등을 빠짐없이 부설하고, 혼합저장하지 않도록 관리 요함.

※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 화재폭발질식-2(고압가스 용기 등 저장 및 보관), 화재폭발질식-6(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질식-9(위험물보관소)



○ 가설통로 안전(도시철도사업부)

- 104환기구 수전반 앞 파이프 등은 전도재해의 위험이 있고 비상시 수전반 관리가 안되므로 통로 확보 요함.

- 굴착하면으로 내려가는 계단하부 목재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개선 요함.

- 101정거장 가시설 작업중 선오거굴착후 H-pile 삽입을 위한 운반시 두줄걸이 이상을 하여 안전사고 예방하기 바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